

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결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96. 4. 1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96. 4. 3

다. 상정일자 : 96. 4. 29 (제44회 임시회 제6차총무위원회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

나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각종기금 관리자의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업무 실과변동으로 관련규정 개정

다. 주요내용

○ 주요내용

□ 현행 : 기금출납 명령관 → 가정복지과장

□ 개정 : 기금운용관 → 사회복지과장

□ 현행 : 기금출납 공무원 → 가정복지계장

□ 개정 : 기금출납원 → 사회복지계장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김재휴)

-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금 운용관리자의 명칭과 소관업무 변경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음.

4. 질의 답변 요지

"생략"

5. 토론요지

"생략"

6. 심사결과 : 【원안가결】

7. 첨부 :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6. 3.

제 출 자 : 화 순 군 수

1. 제안이유

조직직제 개편에 따라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지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의 일부 부를 개정코자함.

2. 주요골자

○ 직제 변경으로 기금운용관인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

3. 관계법령

○ 화순군 조례 제 1396 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

○ 화순군 규칙 제 825 호 화순군 직제규칙 개정규정

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①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 (기금운용관)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 : 사회복지과장
2. 기금출납원 : 가정복지계장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제 9조 (기금운용관)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 <u>을 둔다.</u></p> <p>1. <u>기금출납명령관</u> : <u>가정복지과장</u></p> <p>2. <u>기금출납공무원</u> : <u>가정복지계장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9조 (기금운용관) ① <u>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</u></p> <p>1. <u>기금운용관</u> : <u>사회복지과장</u></p> <p>2. <u>기금출납원</u> : <u>가정복지계장</u></p> <p>② (현황과 같음)</p>